

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 모집공고

‘창업하기 좋은 도시’ 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(정글ON)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○일
성남산업진흥원 원장

1

센터개요

【 킨스타워 】

< 성남창업센터(정글ON)/킨스타워 소개 >

창업이라는 “정글” 속에서 밝은 빛으로 성공의 길을 제시하는 창조적 커뮤니티 공간,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열린 기회와 교류를 통한 성장의 공간

구 분	개방형 킨스타워19/21	독립형 킨스타워20
설립일	2017. 2월	2017. 12월
위치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, 19~21층 (킨스타워, 정자동) ※ 정자역 3,4번 출구 바로 앞	
면적 (전용)	1,045m ² (약 315평)	742m ² (약 225평)
공간구성 (보육규모)	· 입주공간 96석(4, 6인석) / 20개사 · 회의실 3개, 라운지, 강의장 2개, 휴게공간	· 입주공간 13개 호실(6, 10, 12, 14인실) · 회의실 4개, 세미나실, 휴게공간
이용시간	월 ~ 금(09시 ~ 21시) 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 불가	365일 24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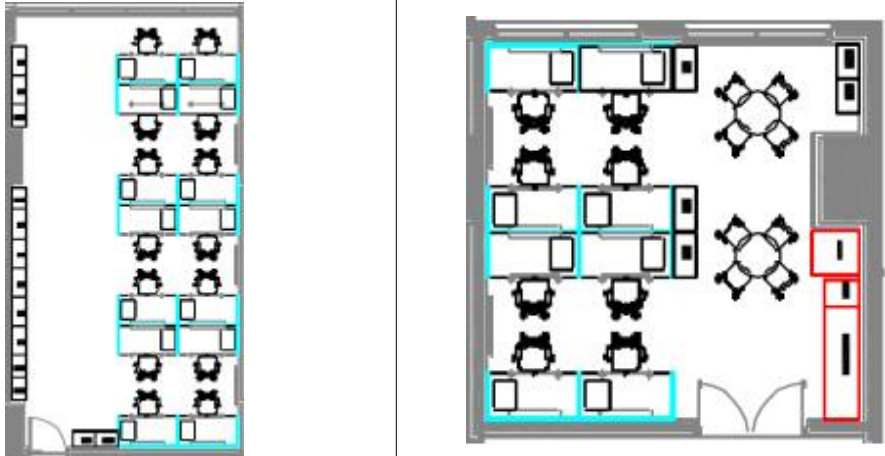
센터전경



【 판교2밸리 창업지원주택 】

설립일	2021. 2월 개소		
위치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0번길 6 (판교2밸리 LH창업지원주택 1층, 3층)		
면적(전용)	2개층 357㎡ (108평) [1층 : 237㎡ (72평) + 3층 : 120㎡ (36평)]		
공간구성	오픈형 업무공간, 회의실, 휴게공간 등		
이용시간	월 ~ 금 (09시 ~ 21시) 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센터 이용 불가 ※ 센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		
센터전경			

【 하이테크밸리 창업지원주택 】

구 분	개방형	독립형
설립일	2023. 12월 / 예정	
위치	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41, 성남재생산단 A3블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2층 (상대원동)	
면적(전용)	79㎡(약 24평)	50㎡(약 15평)
공간구성(보육규모)	· 입주공간 14석(인석) / 4개사	· 입주공간 1개 호실(8인실)
	[지원시설] 회의실 3개, 휴게공간	
이용시간	월 ~ 금(09시 ~ 21시) ※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 불가	
센터전경		

2

모집개요

□ **모집대상** : (공고일 기준) 창업 7년 이내 (예비)창업기업

※ 독립형(킨스타워20(독립형))은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

□ **모집분야** :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※ 제조시설 입주불가

□ **모집규모** : 총 22개사 내외

센터명	개방형		독립형	
킨스타워(15)	10개사	4인석 ~ 6인석	5개사	6인실 x 4개사 12인실 x 1개사
판교2밸리(2)	2개사	5인석 x 1개사 6인석 x 1개사	-	-
하이테크밸리(5)	4개사	2인석 x 1개사 4인석 x 3개사	1개사	8인실 x 1개사

※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(개방형)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

※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

□ **모집기간** : ~ 2023. 11. 8(수), 17시 까지

※ 유의사항

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1일 이전에 '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'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. 마감시간 30분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**신청자격**

구 분	신청자격	비 고
예 비 창업자	▶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(개인/법인)이 되어 있지 않은 자 ※ 입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	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」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(기업) ※ 첨부문서 참조
창업기업 (개인/법인)	▶ (공고일 기준) 창업 7년 이내 기업 - 개인기업 : 사업자등록증명상 '개업연월일' 기준 - 법인기업 : 법인등기부등본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 ▶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	
지 원 "제외"대상	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 ▶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▶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,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(기업) ▶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BI 센터 입주 이력이 있는 기업 ※ 중기부 지침 (중기부 지정 BI센터 확인) https://www.smes.go.kr/binet/incu/center/list.do ▶ 숙박업, 임대업, 유흥업,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	

□ 입주요건

구 분	내 용					
입주기간	2024. 1. 1 ~ 2024. 12. 31 (1년) ※ 입주 연장 평가 후, 평가 결과에 따라 1회(1년) 연장 가능 ※ 진흥원 운영 창업센터(정글ON) 입주 총량 최대 3년, 입주성과(투자, 고용 등) 우수 기업에 한해 추가 1년 연장 가능					
입주비	센터명		입주관리비(보증금)		멤버십비(사용료)	
	킨스타워	개방형	좌석당 20만원		개방형	좌석당 7만원/월
		독립형	좌석당 30만원		독립형	좌석당 10만원/월
	판교2밸리	좌석당 20만원		좌석당 5만원/월		
	하이테크밸리	좌석당 20만원		좌석당 5만원/월		
	※ 입주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함 ※ 멤버십비는 입주 계약체결 시 1년치를 일시불로 전액 현금 납부					
• 예시1 (하이테크밸리 개방형/4인식)			• 예시2 (킨스타워 독립형/12인실)			
- 입주관리비 : 20만원 × 4인 = 80만원 (이행보증보험)			- 입주관리비 : 30만원 × 12인 = 360만원 (이행보증보험)			
- 멤버십비 : 5만원 × 4인 × 12개월 = 240만원			- 멤버십비 : 10만원 × 12인 × 12개월 = 1440만원			
기타	○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(별도 배포 예정) 준수 의무					
	• 입주 및 지원 : 입주 선정평가, 입주기간 및 연장, 입주승인 취소 등					
	• 행위제한 및 퇴소					
• 시설물 관리,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						
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성남창업센터를 본사로 사업자 등록						
※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한 입주 공간(좌석)의 근무인원 확보						

4

선정절차 및 방법

□ 접수 및 선정절차

구 분	시 기	내 용
공 고	'23. 10월 4주차	·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
접 수	공고일 ~ '23. 11. 8, 17시	·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서류평가 일정	~ '23. 11월 중순	· 이메일 결과 안내
발표평가 일정	'22. 12월 2주차	· PT형식 발표평가 진행
최종 선정기업 안내	'22. 12월 중순	· 이메일 결과안내(선정미선정)
상호대차 계약체결	'23. 12월 말 *입주 '24. 1월	· 최종 선정기업 계약체결

* 단,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, 모집결과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

- ☐ **서류평가** :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- ☐ **발표평가** : 서류평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발표(대면)평가
- ☐ **평가기준** : 창업자 및 팀 역량, 기술력, 사업성 및 시장성, 입주타당성 등
- ☐ **결과통보** : (선정, 미선정팀) 개별 통보
- ☐ **가점사항**

① 벤처기업인증 획득기업 (5점) * 유효기간 내에만 인정

② TIPS, 투자유치 등 실적 우수 기업

- 중기부 TIPS 선정 기업 (7점)
- 투자유치 실적(건당 1억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5점) * 보증·용자 제외
- 투자유치 실적(건당 3천만원 이상/최근 3년 이내) 보유기업 (3점) * 보증·용자 제외

③ 【창업지원주택 / 판교2밸리, 하이테크밸리】 입주민 (5점)

- 1)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정규직 직원(4대보험 가입)이 판교2밸리 LH창업지원주택(101동) 입주민인 경우
 - 2) 신청기업의 대표 또는 정규직 직원(4대보험 가입)이 성남재생산단 A3블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민인 경우
- ※ 증빙서류 : (1) LH와의 입주계약서 (2) 주민등록등본 사본 (주민번호 뒷자리 숨김/최근 3개월 이내)

* ①~②는 중복 가점 불가하며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만 인정

** 증빙(인증 확인서, 선정 공문, 투자계약서 등) 미제출시 미인정

*** 서류평가지 심사위원 합산 점수에 가산 반영(서류평가 생략시 발표평가에 반영)

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☐ **접수마감** : ~ 2023. 11. 8(수), 17:00 까지
- ☐ **접수방법** :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snip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신청시 유의사항

- 하단 표의 “제출서류” 중 ① ~ ⑧ 서류를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생성
- 파일명 = “기업명”으로 설정
- ※ 모아찍기 설정 등 인쇄방식 변경 불가

*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기재, 허위기재,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출서류

제출 서류(업로드)		법인기업	개인기업	예비창업자	
				창업경험有	창업경험無
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(지정양식)		○	○	○	
②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원)		○	○	×	
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	○	×	×	
④ 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(유효기간內)		○	○	○ (개인 납세 증명)	
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	○	○	×	
⑥ 사실증명*	가. 사업자등록사실여부	×	×	×	○
	나. 총사업자등록내역	○	○	○	×
⑦ 가점사항(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)		○	○	×	
⑧ 인증, 지식재산권 증빙서류(보유시)		○	○	○	

【 발급경로 안내 】

- 사업자등록증명원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: (인터넷등기소) <http://www.iros.go.kr/>
-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
 - 국 세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
 - 지방세 : (정부24) <https://www.gov.kr>
-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 <https://www.4insure.or.kr>
- 사실증명 : (홈택스) <https://www.hometax.go.kr> / 신청·제출-신청업무-사실증명신청
 -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, 기간 설정없이 발급

□ 문 의 처 : 성남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

구 분		담 당 자	연 락 처
킨스타워	모집·선정	허정원 선임	☎ 031-782-3062
	시설·공간	강수현 주임	☎ 031-782-3274
		김은비 주임	☎ 031-786-0881
판교2밸리	모집·선정	김효실 선임	☎ 031-782-3059
	시설·공간	정다은 주임	☎ 031-759-8913
하이테크밸리		김복민 주임	☎ 031-782-3058

【별첨】 창업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	상세 구분			창업여부	해당기업명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	창업아님	
		이종	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	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	
폐업 3년 까지			창업아님		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	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	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	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	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	이종창업	-	창 업	
	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			
	자회사 여부	법인 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	
	이종		창 업		
기타	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			창업아님	
< 창업 인정 기준 참고사항 >					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					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					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					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					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					
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					